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박상구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현행 조례는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
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승강장의 경계는 시민이 알기 어렵고 특히
승강장의 형태에 따라 실제 생활권과 상이하게 설정되는 등 역세권의
일반적인 개념과 실제 범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,

□ 이 조례안에서는 역의 승강장의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
경우에 한해,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
시장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
내용으로 현행 역세권의 범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‘원안 가결’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